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440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4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가. 2018. 10. 30. 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20.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0.2.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 이양되면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지방자치법」 제164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7개 시·도가 합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안 제26조 신설, 안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 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용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4조)
- 다. 시도 조합회의 구성위원을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에서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으로 개정함.(안 제6조제2항제1호)
- 라. 2017년 7월 관련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9조제5항, 안 제12조제1항, 안 제13조 제1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8조제2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 162조, 164조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

- 2020년 서울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분 세입예산 편성액 : 28,102,000천원, ※ 지방소비세(111-08)로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 : 별첨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조합회의 의결서 : 별첨
- 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 별첨
- 5) 규약 개정 절차

- 조합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 (규약 제2장의 제8조제1항제1호)

-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 (각 시·도)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64조1항)

《세부사항》

【안건상정】 → 【조합회의 의결】 → 【안건확정】 → 【사·도 통지】
→ 【사도 의회 승인】 → 【조합에 통지】 →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 【의안확정】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전환사업보전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조성 배경

-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의 개정(2010.5.10.)으로 설치되었음.
-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의 출연금으로 주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들 3개 시·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비세 안분액¹⁾의 35%를 매년 기금에 출연하고 있음.

1) 현재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1%로 조성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소비지수에 따라 수도권, 비수도권광역시, 비수도권 도(100 : 200 : 300)를 권역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비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2010)→11%(2014)→15%(2019)→21%(2020)로 상향되었음.

- 기금에 대한 관리는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이하 “조합”)을 통해 자율 운영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사업 등을 위한 지방채·공사채의 인수, 자치단체 재정과 보조사업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음.
- 2015년부터는 기금의 고갈 우려로 기금계정을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으로 분리해 출연금의 50%를 각각 나누어 배분하고, 자치단체에 지원과 용자를 병행하여 운용 중임.

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및 배분현황

- 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원의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2019년~2020년)²⁾에 따라 기금의 출연기한이 10년 연장(2020년~2029년)되었음.
- 수도권 3개 시·도가 올해까지 출연한 금액은 모두 4조 2,418억원이며, 이 중 서울시는 1조 9,312억원을 출연하고, 1,440억원(7.4%)³⁾ (재정지원 1,046억원, 용자지원 394억원)을 배분받았음.

<서울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및 배분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출 연	1,497	1,627	1,644	1,681	1,745	1,675	1,755	1,967	1,753	1,953	2,015	19,312
재정지원	107	119	135	143	147	73	77	82	78	85*	미확정	1,046
용자지원	-	-	-	-	-	73	77	82	78	84	미확정	394

*기금 조합 사무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지원액 1억원 포함

- 2)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지방소비세율 확대(11%→21%), 중앙 정부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20%→45%). 국세(7) 대 지방세(3) 비율 개선
- 3) 2020년 배분액 확정 예정임에 따라 2019년도까지의 현황 자료임.

- 서울시의 2020년도 기금 출연금은 기금 출연대상 지방소비세 (5,756억 8천 3백만원)⁴⁾의 35%에 해당하는 2,014억 8천 9백만원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지방소비세 10%p 인상분	-	균특회계 사업이양 보전	-	자치구,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x	서울시 안분율	=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8.7조원		3.6조원		0.9조원		13.646%		5,757억원

라. 조합규약의 개정 내용

(1) 전환사업지원사무의 신설(안 제5조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합의 사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 2. (생략) 3. <u>지역발전</u> 을 위한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신설> 4. ~ 10. (생략)	제5조(조합의 사무) ----- ----- 1. · 2. (현행과 같음) 3. <u>지역발전과 지역상생</u> ----- ----- 4.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5.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4)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서울시 안분액은 2020년도 부가가치세 87조 1,869억 6,200만원 중 지방소비세 10% 인상분 8조 7,186억 9,600만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양 보전 비용 3조 5,680억 6,230만원과 자치구·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9,000억원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에 서울시 안분율(13.646%)을 적용하여 산출함.

-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설립된 조합의 사무에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의 지원’ 사무를 신설하고 있음.
- 정부는 지방소비세 6%p를 인상(2019년, 15%→2020년, 21%)하고, 이를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⁵⁾ 등의 국가보조사업(약 3조 6천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이하 “전환사업”)하는 「지방분권 추진방안」 1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를 3년간⁶⁾ 기금에 납입하여 균특회계 전환사업 비용으로 보전하도록 법이 개정(2019.12.31.)되었고, 이를 반영한 규약의 개정이 필요하게 됨.
- 2020년 현재 지방으로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은 총 98개 사업이며, 서울시는 이 중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외 22개 사업에 전환사업보전금(281억원)을 포함한 709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음(참고자료 3).
-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이를 균특회계 전환사업의 비용으로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한정하는 것은 전환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해석됨.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기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함(2018.3.20.).

6)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3조 5,680억 6,230만원)을 3년간 자치단체에 정액 보전 예정임.

- 그러나 균특회계 전환사업의 재원 부담을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8.7조원)에서 충당하도록 전가함으로써 지방소비세 수입 증가분이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개선하는데 온전히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다만,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경기부양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로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확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조합회의 위원 구성 변경(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생 략) ② 조합회의는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u>1.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u>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u>

- 안 제6조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조합회의의 위원 중 ‘조합원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을 ‘조합원의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서울특별시는 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으로 변경하고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기금 업무를 총괄하는 “재정기획관”을 조합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
- 또한, 조합회의의 구성위원인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시의 경우 직급이 “1급(가등급⁷⁾)”이나 다른 광역시·도는 “2급(나등급)”인 점을 고려해 시·도간 직급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안 제24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88 1084 432 1122"><신 설></p> <p data-bbox="256 1704 496 1742">제24조 (생 략)</p>	<p data-bbox="815 1084 1350 1682"> <u>제24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제도 변경,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조합이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u> </p> <p data-bbox="815 1704 1254 1742">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p>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별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 중 “기획업무담당실장”은 서울특별시(가등급), 광역시·도(나등급)임.

- 안 제24조는 기금 사용자관리계정의 운용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동안 기금 사용자관리계정의 용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별도 심의 절차 없이 재정지원계정 배분 규모에 따라 시·도별 용자 한도액이 결정되는 등 기금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동의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된 법령 개정(2019.12.31.)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전환사업보전계정 신설, 각 계정별 재원·용도 정비(안 제26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p>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발전기금은 <u>재정지원계정과 사용자관리계정</u>으로 구분한다.</p> <p><신설></p>	<p>제16조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 ----- <u>재정지원계정, 사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u>-----.</p> <p>제26조(<u>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과 용도</u>) ① <u>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u>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u> <p>② <u>전환사업보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2. <u>재정지원계정 및 사용자관리계정으로의 전출</u>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전환사업보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합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안 제16조와 안 제26조는 기금의 계정에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해 기존의 “재정지원계정”과 “용자관리계정”과 함께 기금의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정비하고 있음.
- 이는 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보전이 추가되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한 ‘전환사업보전계정’과 재원⁸⁾, 용도 등이 신설(2020.2.25.) 됨에 따라 이를 규약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임.

마. 종합의견

-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조합의 규약 변경 시에는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조합 규약 개정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음.
- 규약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맞춰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임.

8)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①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가목에 따른 금액 : 3조 5,680억 6,230만원, ② 기금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

- 다만, 기금 출연 기한이 2020년부터 10년 연장되면서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만 출연하는 현재의 기금 출연방식과 비수도권 중심의 배분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됨.
- 즉, 정부와 일부 부유한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출연방식, 복잡한 배분 기준의 단순화, 적정한 기금의 조성규모와 출연비율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배분된 기금재원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지원이나 용자 등 실질적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사업의 명확한 관리와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1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동)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용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용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용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동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발전기금의 관리·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②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

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용자관리계정
2. 법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3.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발전기금: 전환사업보전계정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자원) 재정지원계정의 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수입금
3. 용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4(용자관리계정의 자원) 용자관리계정의 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용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자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2.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수입금

■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1조(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법률 제1211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9. 2. 8., 2019. 12. 31.>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해당 시·도의 안분액} = \frac{\text{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times 5\% \times \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text{해당 시·도의 안분액} = \{[A - (A \times B) - (A \times C)] - D\} \times E$ <p>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p> <p>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p> <p>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p> <p>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A - (A \times B) - (A \times C)] \div 11\}$</p> <p>E: 해당 시·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p>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text{해당 시·도의 안분액} = \text{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times 10\%$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text{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times B) \times C$ <p>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p> <p>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p> <p>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p>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총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text{해당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times B) \times C - D$ <p>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p> <p>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p> <p>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p> <p>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총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총당되는 안분액</p>
--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총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도에 총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text{해당 시·도의 안분액} = (A + B) \times C$ <p>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p> <p>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p> <p>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p>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각 시·군·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 나. 각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해당 시·도의 안분액	=	$ \begin{aligned}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times \\ & 10\%) - (\text{제1항제3호의 금액} \\ & + \text{제1항제4호 각 목의 금액} \\ & \text{의 합})] \times \end{aligned} $	$ \frac{\text{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times \text{해당 시·도의 가중치}}{\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
----------------	---	---	---

[참고자료 2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0. 2. 25.>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제13조의2제3항 관련)

1. 소하천 정비
2. 농어업기반 정비
3.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4.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5.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6.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7.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8. 지방하천 정비
9. 산림경영자원 육성
10. 관광지 개발조성
11.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12.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15.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16. 청소년시설 확충
17.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8.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19.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20.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21. 문화특화지역 조성
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23. 문예회관 건립 지원
24.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25.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26.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7.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28. 복합문화시설 조성
29. 전통사찰 보수정비(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30.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31.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3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33.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34.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3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6. 작은영화관 건립
37.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38. 지역문화행사 지원
39. 지역대표공연예술제
40.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41.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42.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지원
43.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44. 마을만들기
45.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46. 농촌다움 복원
47. 농촌현장포럼
48.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49. 농촌 재능나눔
50.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1.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2.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5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54. 생태하천복원(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제외한다)
5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56.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57. 비산먼지저감사업
58. 서식지 외 보전기관 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59.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6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61. 생태휴식공간 확대
62.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63.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6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제외한다)
65. 지역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66. 지역 마리나시설 조성
67.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68.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69. 공유수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
70.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71.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관련 냉동·냉장시설 지원(클러스터형 사업은 제외한다)

72.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73. 낚시터 환경개선
74. 적조피해 예방 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말한다)
75.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76.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77.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78.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79.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80.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81. 농업인조직체 가공 플랜트 지원
82. 농업전문인력 양성(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3. 농가경영개선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4.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5.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86. 숲길조성·관리
87.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88. 유아숲체험원 조성
89. 치유의 숲 조성
90.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91. 지방정원 조성
92.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93. 지역생태숲 조성
94. 산림교육센터 조성
95. 산림복지단지 조성
96. 수목장림 조성
97. 공동체 정원 조성
98.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간선임도 조성은 제외한다)

[참고자료 3 : 2020년도 서울시 전환사업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	자치단체 세부사업	'19년 균특회계 국비	'20년 예산편성액		
				전환사업 보전금 (A)	시비(B)	계 (A+B)
총계			26,022	28,102	42,834	70,936
1	전통시장유통물류기반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3,237	13,237	7,097	20,334
2	청소년시설확충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	1,886	3,420	5,306
3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소월아트홀 리모델링 지원	-	1,764	-	1,764
4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	1,750	1,750	17,866	19,616
5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1,531	1,530	1,470	3,000
6	예술의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1,910	1,330	-	1,330
7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양천문화원 건립	-	991	-	991
8	청소년시설확충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815	815	5,349	6,164
9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유아숲체험시설조성(경상, 자본)	650	650	1,867	2,517
10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문화특화지역 조성	300	600	-	600
1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598	598	-	598
12	지역문화행사지원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	500	500	-	500
13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서울둘레길 유지관리	450	450	250	700
14	생태휴식공간 확대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	360	-	360
15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홍제권리빙랭기반 의료산업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351	351	-	351
16	생태휴식공간 확대	자연마당 조성	350	350	-	350
17	지역문화행사지원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500	320	-	320
18	청소년시설확충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192	192	4,805	4,997
19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	111	-	111
20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10	110	500	610
21	반려동물산업육성	반려견 놀이터 조성	90	90	210	300
22	생태휴식공간 확대	생태놀이터 조성	70	70	-	70
23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47	47	-	47
중 요 사 업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보수정비	660	-	-	-
중 요 사 업	문화시설확충및운영	갈산 문화복합시설 건립	1,000	-	-	-
중 요 사 업	문화시설확충및운영	금천문화원 공간 개선	800	-	-	-